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4. 2. 4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. 20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4. 1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04. 2. 4)
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창수 보건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보건소에서 진료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되어 이를 정비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항결핵제 처방 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종전에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의료급여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(안)의 주요골자는 제3조제1항을 “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”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이는 의료급여법(2003.5.15 법률제6875호) 및 의료급여법시행령(2003.12.30 대통령령제18206호)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박영길 위원) : 1종·2종 보호대상자와 1종·2종 수급권자의 내용상 차이점은?
- 답변요지(김창수 보건위생과장) : 내용은 같고 법령개정에 따라 용어만 변경된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4. 1.19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보건소에서 진료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되어 이를 정비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항결핵제 처방 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종전에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의료급여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3. 근거법령

- 가. 지역보건법(1999.2.8 법률 제5852호) 제14조
- 나. 의료급여법(2003.5.15 법률 제6875호) 제2조 및 제3조 등
- 다. 의료급여법시행령(2003.12.30 대통령령 제18206호) 제3조

4. 조 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3.12.5.~12.25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4.1.19)
- 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제8호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<u>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</u> <u>한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</u> <u>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</u> <u>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u></p> <p>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~7.(생 략)</p> <p>8. 기타 <u>구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</u> <u>하는 보건의료사업</u>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<u>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</u> <u>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</u> <u>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</u> <u>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</u></p> <p>②----- ----- -----</p> <p>1.~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<u>서울특별시마포구침장(이하</u> <u>“구침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